

# 제810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건 명 : 구로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
- 심 사 일 : 2013. 8. 13.
- 사업개요
  - 용역비 : 36,685천원
 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2개월
  - 사업규모 : 구로구 구로5동 111번지 일원, 30,996m<sup>2</sup>
  - 심사결과 : 적 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u>미대상</u>	『구로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』에 대한 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도로, 조경, 공공시설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[용역비 조정 : 36,685천원 → 26,763천원 (감9,922천원, 용역비 대비 -27.05%)] [심사내역] ○ 추정사업비 조정 : 479,348천원 → 435,770천원(부가세 제외) ○ 기본설계가 없는 실시설계 통합발주 설계요율 적용 - 설계요율 : 4.07×1.3 = 5.29% → 5.09% ※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09호(11. 9. 5) ○ 보고서 인쇄비 제외 : 3,000천원 → 0 (설계요율에 기포함) ○ 조감도 등 CG작업비 비용조정 : 5,000천원 → 2,000천원 ○ 손해배상공제료 추가적용 : 150천원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본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시행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적정